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에너지취약계층 맞춤 지원사업 및 직권신청 근거 신설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37호)

2026. 9.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에너지 취약계층 맞춤 지원사업 추가	3
2. 에너지이용권 직권신청 근거 마련	7

I. 제안경위

2026년 4월 10일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효율 개선 사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의 경우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 예산의 약 80% 이상이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요금 보조 형태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노후 주택의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근본적인 빈곤 악순환을 끊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신청주의’ 원칙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가구가 제도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례없이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후위기가 결합된

다중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한 시혜적 요금 지원 방식인 ‘에너지빈곤 대응’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에 노후 주택의 에너지 요구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되 수급자의 거부권을 보장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6조의3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에너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추가

개정안은 에너지복지 사업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 환경의 개선’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 환경의 개선</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6조의2¹⁾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1)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냉·난방 장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사업과 그 외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시공·물품지원	냉방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가구,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 제외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등 주택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에어컨 등 냉방용품 지원
지원액		-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 시설당 최대 1,100만원 이내 지원	
2026	예산	- 101,540백만원	- 17,100백만원
	지원 규모	- 가구: 3.7만가구 - 사회복지시설: 250개소	- 가구: 1.9만가구 - 사회복지시설: 500개소

또한 제16조의3²⁾에서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해 에너지이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발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에너지바우처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에너지바우처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예산	(‘23) 1,811억원 → (‘24) 5,706억원 → (‘25) 4,770억원 → (‘26) 4,888억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기 후민감계층* 약 144만 가구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단가	(‘23) 34.7만원 → (‘24) 38.2만원* → (‘25) 36.7만원 → (‘26) 36.7만원** *2024년도의 경우 한시적으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1.5만원/가구) ** 2025.12. 취약에너지(등유·LPG) 이용 가구 단가 14.7만원 인상 등유·LPG 지원단가: 36.7만원 → 51.4만원
지원방법	- 실물카드 : 연탄, 등유, LPG 등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 구매 - 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2026년 예산 지원기간	- 2026.7. ~ 2027.5.

그런데,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이 단순 에너지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편중³⁾되어 있어 노후 주택의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2026년 예산이 1,214억 1,100만원인 반면,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은 4,888억원으로 약 4배 가량 많음.

근본적인 빈곤 악순환을 끊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 환경의 개선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는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사업 등에 포함될 수 있는바, 개정안의 내용은 상당 부분 현행법상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추진시 대상 가구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맞춤형 에너지 공급’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동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에너지효율이 낮은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에너지복지 정책이 에너지비용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이정민·김진석,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취약한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의 관계: 패널로짓 분석」, 보건사회연구 45(2), 2025, 517-542p.)

2. 에너지이용권 직권신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생략) <u><신설></u>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생략)	④ -----제3항----- -----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⁵⁾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존재를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신청주의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⁶⁾.

다만, 현행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주체를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 신청의 주체도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할 필요가 있음⁷⁾.

5)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6) 유사입법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있음.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7) 이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직권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법 제23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을 개정하여 에너지이용권 직권신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이용권의 직권 신청을 위해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자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현행법상 연계·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⁸⁾에 따른 시스템⁹⁾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¹⁰⁾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6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8)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9)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동 시스템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시스템으로 실제 수급 자격 검증에 활용되지 않고 있어 실제 활용가능한 시스템의 연계 사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